

글로벌스마트디지털축산선도인재양성사업팀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‘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’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스마트디지털축산선도인재양성사업팀(이하 ‘사업팀’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여 사업팀에서 주관하는 제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팀의 구성) ① 사업팀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와 사업팀 참여 교수,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등으로 구성된다.

② 사업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는 사업팀의 장(이하 “사업팀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③ 사업팀은 사업팀장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고, 집행부서로서 기획관리부와 교육사업부를 둔다.

제3조 (사업팀장) ① 사업팀장은 충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사업팀장은 사업팀을 대표한다. 단, 사업팀의 법률행위는 산학협력단장이 대표한다.

③ 사업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 총괄
2.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총괄
3.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총괄
4. 그 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

제4조 (사업부의 장)

① 사업팀에 소속된 사업부의 장(이하 “사업부장”이라 한다)은 사업팀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팀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.

② 사업부장은 자금관리 등 행정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사업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③ 사업부장의 책임강의 시수는 사업부장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고려

하여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

-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의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을 포함한 사업팀 참여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팀장이 되며,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소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해산에 관한 전결 권한을 갖는다.
- ⑤ 기획관리부장은 부위원장을 겸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승인한다.
 1. 사업팀 기본운영 계획
 2. 사업팀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결산
 3. 사업팀의 사업추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폐정
 4.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6조 (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) ① 참여교수는 사업팀 신청서와 같이 충남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의 전임 교수 100%로 구성된다.

- ② 참여교수는 교육부의 BK21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 상의 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 참여교수의 휴직, 은퇴, 신규채용 등의 사유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해당결과를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(참여교수의 성과급) 참여교수에게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차등지급 할 수 있다.

제8조 (집행부서) 사업단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기획관리부와 교육사업부의 집행부서를 둔다. 각 부에는 부장을 둔다. 각 부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기획관리부 : 전체 사업을 기획·관리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
 - 2.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
 - 3. 예산의 집행 및 관리
 - 4. 기타 사업단 운영관련 제반 행정지원

- ② 교육사업부 :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제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수립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우수학생의 유치 및 양성
 - 2. 대학원생의 해외과건 및 연수
 - 3. 대학원생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

제9조 (사업비 사용 및 결산)

- ①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재원은 국고지원금(BK21플러스사업), 산업체 대응자금, 대학교 대응자금, 기타 외부자금 등으로 한다.
- ② 사업비는 중심대학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회계안에서 본 사업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,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.
- ③ 사업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각 부의 팀장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사업팀의 각 집행부서에서 사업팀장의 승인 하에 사업비를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에 분기별 사용 내역을 보고한다.
- ⑤ 본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정부의 회계예산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 산학협력단 회계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 (시행세칙)

-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훈령 및 관계법령에 따르며 그 외의 세부사항은 사업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석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